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89호 | 발행인 : 박상희 | 발행일 : 2021년 11월 12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 I. 아동학대 재발 방지 시스템 강화 필요성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지속적 노력 필요

-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지난 1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부모가 주 학대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남.<sup>1)</sup>

▶ 2020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30,905건) 중 11.9%(3,671건)에 이르는 재학대의 경우, 부모의 재학대가 3,492건(95.1%)으로 절대적으로 높음.<sup>2)</sup>

아동학대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아동학대 재발 감소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2020년, 전체 학대피해 아동의 83.9%에 대해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재학대의 경우도 원가정보호 비율이 68.3%에 달함.<sup>3)</sup>

▶ 이와 같이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원가정보호 조치 사례, 보호조치 종료 이후 원가정 복귀 사례 등 학대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사례에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 II. 현행 학대피해 아동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아동복지법 제16조의2와 제28조의2에서 아동학대 사후관리 의무, 수행주체,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법<sup>4)</sup>

▶ 「아동복지법」 제16조의2에서 지자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이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도록 명시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김니영·유해미·박은정·김지연·송신영, 2021)」에 기초하여 작성됨.

1) 2020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0,905건 중 82.1%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친부(43.6%)와 친모(35.4%)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함(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28).

2)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p.5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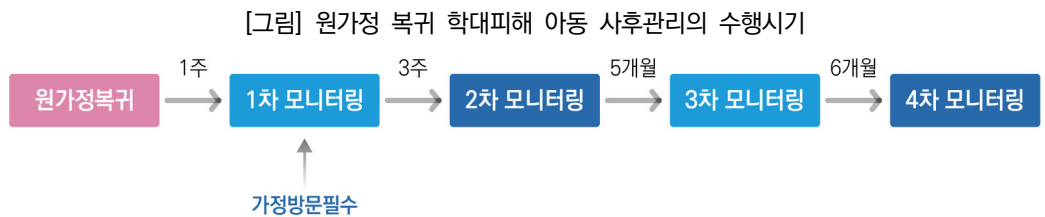
3) 통계청.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30&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B&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30&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B&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인출: 2021. 10. 25).

4)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aw.go.kr>) (인출: 2021. 7. 1)

원가정 복귀 아동의 사후 모니터링은 1년간 4회 실시됨.

- ▶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서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이후로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 등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 제공 가능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sup>5)</sup>
  - ▶ 원가정에 복귀한 아동의 경우<sup>6)</sup>, 시·군·구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사후관리 및 원가정 외 보고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1년간 4회 수행함.
  - ▶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에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1개월 이내 2회 이상의 모니터링, 6개월 이후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이 때, 1차 모니터링은 반드시 가정방문으로 함(필수).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10.

- ▶ 원가정 복귀로 인하여 보호조치가 종결되면, 아동의 가정생활 적응정도, 보호자 양육태도 등을 모니터링 함.
- ▶ 원가정 복귀 후 생활환경과 아동의 만족도 등 아동·보호자의 가정생활을 점검할 때, 양육계획서, 아동·친부모 상황의 점검과 사후관리 점검표를 활용함.

### Ⅲ.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sup>7)</sup>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에 대한 근원적 인식 개선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의 근본적 인식 변화와 이를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필요
  - ▶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적절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대 노력이 필요함.
  - ▶ 학대 원인 미해결 상태로 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하여 피해아동의 조기 가정복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개인이 학대행위자가 제기하는 민원이나 고소에 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아동학대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표준화된 내용 보완 필요
  - ▶ 현재 원가정 복귀 아동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원가정 복귀 이후, 보다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척도 및 도구 개발 노력 필요

5)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p.109-133.

6) 해당 내용은 보호시설 퇴소 연령이 초과되기 전의 경우에 대한 것임.

7)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김나영 외, 2021)」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6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관리체계 전반과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임.

원가정 복귀 아동의 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장기적 모니터링, 안전 점검을 위한 대면상담 강화,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필요

- ▶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 정도를 판단 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표준화된 척도 및 도구 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원가정 복귀 아동의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치는 재학대 발생 여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가정상담치료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원 확충’이 많은 응답을 차지함.
  - ▶ ‘모니터링’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대면상담, 부모의 양육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회복 및 올바른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정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 ‘인원 확충’과 관련하여, 기관 상담원 또는 치료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례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함.

〈표〉 보호조치 종결 이후의 재학대 발생 예방 위한 조치 순위

1순위	모니터링(관계개선, 재학대 여부 등)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대면상담, 유선상담 등) 인력확충(아동보호전문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2순위	상담 및 교육(아동권리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공공기관, 지역 내 유관기관, 교육기관 등) 협력체계(지역사회복지관, 주변기관 등) 법적 강제력(가족상담, 사후관리 등에 강제력 부여)
3순위	가족기능관련(관계개선프로그램,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연계(상담연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지역사회자원 연계, 공공서비스 연계)

자료: 김나영 외(2021).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IV.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사후관리의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여 세부규정을 구체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업무 분장 명료화를 통한 사후관리 내실화 강화

##### 1 학대피해 아동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보완

- 사후관리의 법률적 근거 보완 필요
  - ▶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서는 일시보호, 보호조치 결정, 보호종결에 관한 세부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보호조치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은 미비함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및 제28조에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필요시에는 보호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률인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이를 제·개정 할 필요 있음.
  - ▶ 법률적 근거 보완을 통하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 요원이 새롭게 배치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발생한 업무 변경 상황 하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사후관리 업무 수행체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정보 관리 등 학대 관련 정보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

## ② 원가정보호 아동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체계를 정부차원에서 세밀하게 설계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개선하여야 함.
  - ▶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이후 다른 보호조치 없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정보 관리 역시 필요함.
  - ▶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은 오히려 경미한 학대로 판정받아 처벌 받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sup>8)</sup> 원가정보호 조치된 아동을 별도의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 있음.
  - ▶ 아동학대 판정 이후 판결 받은 사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원가정보호 조치 사례 등 정보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구분·설계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야 함.
  - ▶ 미국의 경우, 전체 신고·접수 사례를 ‘조사 트랙’과 ‘비조사 트랙’으로 이분하여 차등화된 트랙에 따라 관리하는 차등적 시스템을 운영함.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객관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다 보완된 가정 내 안전 점검 척도 및 도구 개발 필요

## ③ 모니터링 도구 개발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객관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다 보완된 가정 내 안전 점검 공통(보편적) 척도 및 도구 개발 필요
  - ▶ 원가정 복귀 이후 시기별로 가정 내 생활환경(물리적 환경), 안전 및 건강, 가족관계, 부모역량 평가, 학대피해 아동의 가정 외 교육 및 보육기관에서의 생활 상태 등 다각적인 측면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 상기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을 보다 세분화 하고 선별·체계화 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사후관리 담당자가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상황을 계량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 자가양육점검표를 개발하여 부모 스스로 양육역량을 진단하고, 아동학대 사후관리 서비스로 인해 변화된 점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여, 자발적 인식이 불가능했던 본인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 기회를 제공해야 함.

기초지자체 단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지역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상시적 현황 파악을 도모하여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적 대응해야 함.

## ④ 기초지자체 단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아동학대 밀착 관리

- 유관기관 인력,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학대 전담 요원, 지역 내 아동학대 전문가 등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협의체 구성하여 아동학대 밀착 관리
  - ▶ 협의체 설립은 지역사회 내 가용 전문인력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물리적 공간 및 프로그램 공유 등 인프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 내의 아동학대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원 가능 서비스 및 자원 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의 상시적 논의가 필요함.

김나영 부연구위원 nkim@kicce.re.kr

8)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김나영 외, 2021)」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6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관리체계 전반과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임.